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8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8월 30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 제안이유

- 조직개편('19. 1. 1.)에 따른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시설의 주관부서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십대여성건강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 지원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을 부적합하게 준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참조

(2) 입법예고(2019. 5. 9. ~ 5. 29) 결과: 의견있음(별도 첨부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및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시설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안 별표1)

1) 시설 명칭 변경

- 조례안(안 별표1)은 현행 조례¹⁾에서 규정한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십대건강센터’의 명칭을 ‘십대여성건강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청소년’이 공식적인 행정용어에 부적합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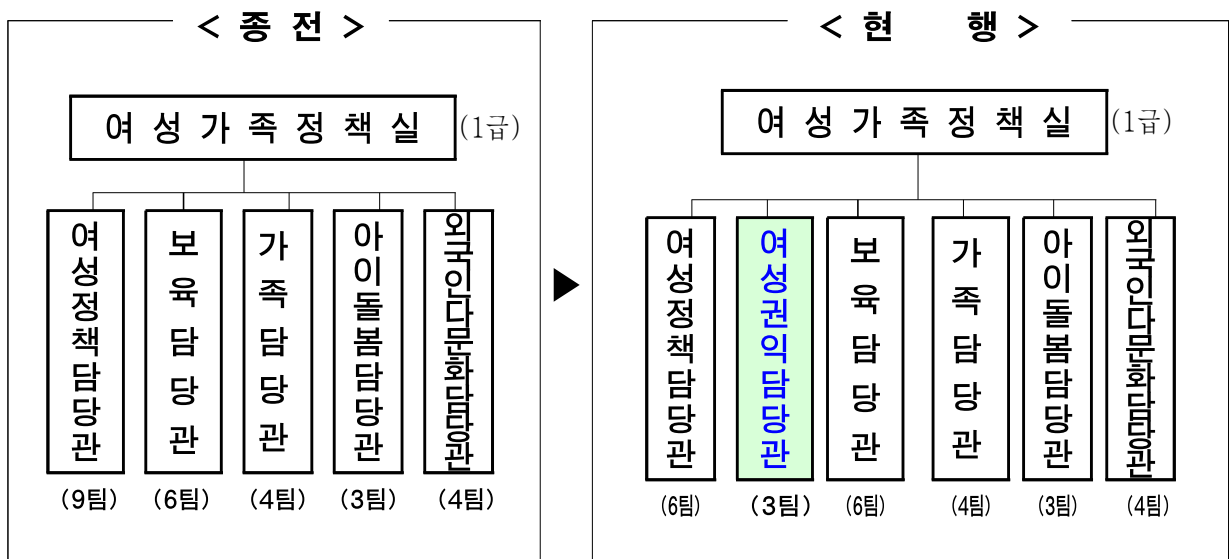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4.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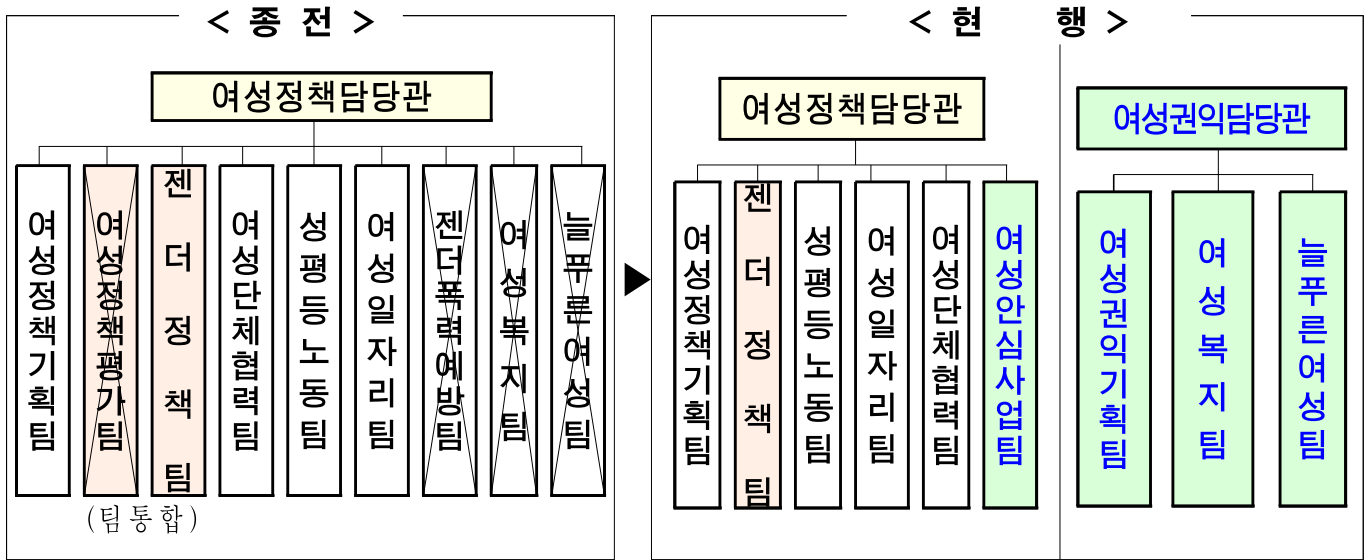
수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대신 ‘십대여성’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조직개편 사항 반영

-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 계획(조직담당관-11121호, 2018.9.21.)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젠더폭력 시책 총괄 부서로 여성권익담당관이 신설(2019.1.1.)된 바 있음.



- 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에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십대여성 지원 시설을 담당하던 늘푸른여성팀이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이관된 바,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십대여성 지원 시설 주관부서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7조 제2~4항)

- 개정안(안 제7조제2항 하단)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원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집행부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한 바, 예산·회계를 포함한 관리·운영, 인사, 재산·물품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²⁾을 완화하여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인사 채용에 있어 보다 탄력적인 집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2) 「서울특별시 위기 심대여성 지원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④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은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록 하였음.

- 다만 조례 제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한 규칙(현행 조례 제7조제4항)을 만들지 않고 금번 개정으로 피해나가는 것은 집행부의 조례집행에 대한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9조)

- 현행 조례(제9조제2항)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 시설은 민간위탁 시설로서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는 동 시설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개정안(안 제9조 제2항)은 보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현행	개정안
제9조(지도·감독) ① (생략)	제9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u>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u>	② ----- ----- ----- <u>경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u>

현행	개정안
<p><u>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u>제7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있어</u>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u>지원 예산을 교부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u>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u>교부한 예산</u>을 환수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규정을 준용한다.</p>	<p>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u>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u>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u>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u>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u>해당 사업비</u>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삭 제></p>

- 또한 개정안(안 제9조제3항)은 민간위탁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환수조치의 대상이 ‘민간위탁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비”로 명시하여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 시설의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주관부서를 바꾸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조례에 규정되는 명칭 등의 경우, 이해하기 쉽고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8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19. 1. 1.)에 따른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시설의 주관부서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십대여성건강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 나. 지원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을 부적합하게 준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5. 9. ~ 5. 29) 결과: 의견있음(별도 첨부)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경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의 주관국(과)란 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권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시설명란 중 “청소년건강센터”를 “십대여성건강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p> <p>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원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지원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p> <p>③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p>	<p>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u>④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은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u></p> <p>제9조(지도·감독) ① (생략)</p> <p>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u>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교부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u>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교부한 예산을 환수하여야 한다.</u></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규정을 준용한다.</p>	<p><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9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경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u>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u></p> <p><삭제></p>

현행				개정안			
[별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생략)	(생략)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권익 담당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u>청소년건강센터</u>	(생략)	(생략)		◦ <u>십대여성건강센터</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생략)	(생략)		◦관악늘푸른교육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생략)	(생략)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십대여성 일시지원 센터 (류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대여성일시쉼터’ 기관 명칭을 현재 명칭 그대로 사용하거나 ‘십대여성일시보호센터’ 및 ‘십대여성쉼센터’로 변경 요구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유형인 ‘청소년쉼터(일시쉼터)’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십대여성들이 거부감 느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이용자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명칭을 그대로 유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사항에는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명칭 변경
 - 청소녀건강센터 ⇒ 십대여성건강센터
 - 주관부서 변경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권익담당관

4. 작성자

-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심효진(☎02-2133-5334)